

연구실 정밀안전진단의 직접 실시요건(제11조제1항 관련)

진단 분야	진단 실시자의 인적 자격 요건	물적 장비 요건
일반안전, 기계, 전기 및 화공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 인간공학기술사, 기계안전기술사, 전기안전기술사 또는 화공안전기술사 1의2. 법 제34조제2항에 따른 교육·훈련을 이수한 연구실안전관리사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분야의 박사학위 취득 후 안전 업무 경력이 1년 이상인 사람 가. 안전 나. 기계 다. 전기 라. 화공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능장·기사 자격 취득 후 관련 경력 3년 이상인 사람 또는 산업기사 자격 취득 후 관련 경력 5년 이상인 사람 가. 산업안전기사 또는 산업안전산업기사 나. 일반기계기사 다. 전기기능장·전기기사 또는 전기산업기사 라. 화공기사 또는 화공산업기사 4. 「전기안전관리법」 제22조에 따른 전기안전관리자로서의 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정전기 전하량 측정기 접지저항측정기 절연저항측정기
소방 및 가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 소방기술사 또는 가스기술사 1의2. 법 제34조제2항에 따른 교육·훈련을 이수한 연구실안전관리사 2. 소방 또는 가스 분야의 박사학위 취득 후 안전 업무 경력이 1년 이상인 사람 3. 가스기능장·가스기사·소방설비기사 자	가스누출검출기 가스농도측정기 일산화탄소농도측정기

	<p>격 취득 후 관련 경력 3년 이상인 사람 또는 가스산업기사·소방설비산업기사 자격 취득 후 관련 경력 5년 이상인 사람</p> <p>4.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른 소방안전관리자로서의 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p>	
산업위생 및 생물	<p>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p> <p>1. 산업위생관리기술사</p> <p>1의2. 법 제34조제2항에 따른 교육·훈련을 이수한 연구실안전관리사</p> <p>2. 산업위생, 보건위생 또는 생물 분야의 박사학위 취득 후 안전 업무 경력이 1년 이상인 사람</p> <p>3. 산업위생관리기사 자격 취득 후 관련 경력 3년 이상인 사람 또는 산업위생관리산업기사 자격 취득 후 관련 경력 5년 이상인 사람</p>	<p>분진측정기</p> <p>소음측정기</p> <p>산소농도측정기</p> <p>풍속계</p> <p>조도계(밝기측정기)</p>

비고

1. 물적 장비 중 해당 장비의 기능을 2개 이상 갖춘 복합기능 장비를 갖춘 경우에는 개별 장비를 갖춘 것으로 본다.
2. 진단 실시자는 해당 기관에 소속된 사람으로 한다.